

『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, 상위법령인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 - 현행 : 「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」
 - 개정 : 「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
-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
(안 제2조, 제3조)
-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편성·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
(안 제4조)

○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(안 제6조)

-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: 2023년 12월 31일까지

○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,
「지방재정법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은

-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존속기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